

[제정일 : 2013년 5월 23일]

내부거래위원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회사의 내부거래를 투명하게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내부거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업무)

위원회는 본 규정에 의한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사전에 심사 및 승인한다.

제 4 조 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함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위원 총수의 2/3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때까지로 한다.
- ④ 위원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 잔여 사외이사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하고, 잔여 사외이사가 없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를 통해 위원회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단,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지체 없이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결의로 선임한다. 단, 초대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 또는 기타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6 조 (위원회의 권한)

- ① 위원회는 의안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, 관련 사업의 주요 내용, 계약방식 및 거래상대방 선정기준, 세부거래 조건 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거래당사자 선정의 적정성, 세부 거래조건의 타당성, 수의계약 체결사유 해당 여부, 비 계약 독립기업에 대한 직발주 가능성을 검토하여,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 등

에 위반 우려가 있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회사에 시정을 건의할 수 있다.

제 2 장 회 의

제 7 조 (종류)

-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.
-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8 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위원회를 소집한다.
- ②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9 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일을 정하고 그 3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우편, 모사전송 (FAX),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10 조 (의안제출)

- ① 위원회 상정 의안과 그 제안 이유는 각 해당부서에서 작성하여 회의일 1주일 전까지 위원회 간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간사는 전항 접수 의안에 문안 검토를 거쳐 이를 위원회에 부의한다.

제 11 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의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② 신속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 12 조 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계열사와의 분기 누적 거래 30억원 이상의 용역 또는 물품 구매 등 거래
- ② 계열사와의 단일거래 대상 3억원 이상의 수의계약에 의한 용역 및 물품 구매 등 거래
-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 13 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14 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15 조 (보고)

위원회는 심의내용 및 결의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6 조 (간사)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- ③ 제1항의 간사는 재정담당 부서장으로 한다.

제 17 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